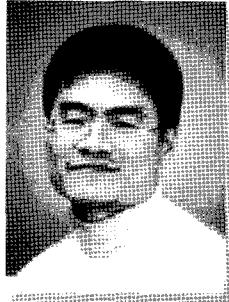


특허와 독점



정 일 영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 신임보연구원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권리의 부여 및 그 행사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여 소비자복지를 확대하고 기술개발투자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견제와 조화를 위한 경쟁법적 고려가 요망된다.
원래 “독점의 허용”과 “경쟁의 달성”을 균형시키는 문제가 지재권법의 최대의 과제이며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다.

I. 머리말

생떽쥐베리의 어린왕자가 만난 상인은 하늘의 수 없는 별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무슨 생각을 맨 처음으로 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별을 차지할 생각을 제일 먼저 한 상인이 헤아린 모든 별들은 자기 차지가 된다고.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이라 함)의 취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물론 여러분은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것이다.

지재권법은 발명·저작물·상표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재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시기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며, 발명

이나 저작물 또는 상표에 대한 독점의 허용은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재권법과 공정거래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률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공정거래법 제1조, 특허법 제1조)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재권법에 의한 권리의 부여 및 그 행사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여 소비자복지를 확대하고 기술개발투자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견제와 조화를 위한 경쟁법적 고려가 요망된다. 원래 “독점의 허용”과 “경쟁의 달성”을 균형시키는 문제가 지재권법의 최대의 과제이며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양자를 어떻게 균형시킬 것인가는 입법정책

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지재권법은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조자에게 창조의 동기를 부여하고, 2차적으로는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여러 제한(예컨대 존속기간)을 가하여 경쟁을 촉진하려고 시도한다.

최근에는 소위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이하 BM특허라 한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다. 현재는 위반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에 이르렀지만, BM특허에 기준의 기술 특허와 동등한 권리를 주고 또 공정 거래법상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한 동등한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미칠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재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고, 특허권의 취득·행사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검토한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를 필두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상기 법들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한 문제점을 각 사안에 따라 언급한다.

II.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I. 개요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 역할을 하지만, 만일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각국은 특허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신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특허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

지, 신기술에 대한 독점권 부여는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한 국가의 특허권이 국제적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재산권에 따른 독점권 또는 그 실시허락계약과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미해결의 문제가 존재한다.

2.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이념

특허권은 특허받은 기술적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특허법 제94조),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공정거래법 제1조). 즉 전자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독점의 폐해나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적어도 법 형식상으로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 법의 목적은 산업 혹은 국민경제의 발달이고, 궁극적인 이념에 있어서는 모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양 법 간의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법과 공정거래법은 모두 기술혁신의 촉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재권법은 새롭고 유용한 제품, 더욱 효율적인 공정, 또는 창작적인 표현이 담긴 작품 등을 창작한 자에게 법적 강제력을 가진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유포 및 그 상업적 이용에 관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제도가 없다면 단순한 모방자들은 기술혁신을 이룬 자와 이에 투자를 한 자의 노력을 아무런 보상 없이 그것도 재빠르게 도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도용행위가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기술혁

신이 가지는 상업적 가치와 투자의 유인을 절감시키는 것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른 한편 공정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유익을 주는 기존 또는 새로운 활동 방식들과 관련하여 시장경쟁을 해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규제함으로써 기술 혁신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허권에 의한 독점은 법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반하지 않으며 특허권의 고유한 행사로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의 실시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예컨대 재판매가격조항, 그랜트백조항 등)에 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리하여 특허권 고유의 권리의 행사란 무엇인가, 혹은 어떠한 부가조항까지 합법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특허법은 활발한 기술개발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타적인 독점권인 특허권의 부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공정거래법과 공통성을 가지며, 그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즉, 특허법은 기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공정거래법은 경제분야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한 기업이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지만, 그것이 활발한 기술개발경쟁을 저해하게 되면 특허법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또한 배타적 독점권인 특허권을 특허법의 목적을 일탈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폐해가 많으며, 특히 그것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에도 위반하게 된다. 즉, 특허권이라는 배타적 독점권은 산업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되게 이용되어야 하며, 그것을 일탈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그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이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입장은 법형식적으로는 일응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이 법의 규정은 “특허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됨에 따라 하나의 발명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광범위한 관련기술, 거액의 자금, 장기간의 시간 그리고 위험 부담 등이 요구됨에 따라서 한 개인 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소위 주변기술에 해당하게 되면, 시장지배력을 형성 또는 강화하거나 안정된 초파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당해 기업에 흡수되어 버리게 된다. 이들은 특허법상으로는 직무발명의 규정 또는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발명 내지 특허발명의 이용도 점차 발명자 개인으로부터 대규모의 생산설비와 자본력을 가진 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다.

여기서 특허권의 배타적 독점성은 발명자에게 경쟁상 유리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특허실시료 내지 양도 대가의 징수권으로 가능한적인 변질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의 배타적 독점성은 기업에 집중되어, 기업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장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제도는 20세기 이후의 과학기술 및 자본주의체제의 질적 변화에 따라 독점자본에게 적절한 피난장소를 제공하고, 또 그것에 봉사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행사와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은 제59조에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상표권이나 특허권의 행사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에서는 이미 판례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고, 1957년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제20조, 1956년 영국의 제한적 거래관행법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 제8조, 1962년 EEC 조약 제86조와 제86조에 관한 제1시행규칙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법규 중에서 유럽의 경우처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또는 미국과 같이 그 범위를 전면적으로 해석과 운용에 맡겨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법제는 i) 권리의 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CWB 제20조1항)과 ii) 권리자의 지위를 이용한 비본래적 행사, 즉 일반계약상의 제한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법제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된다. 양자는 공정거래법상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결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직접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권리남용의 법리를 개입시켜야 비로소 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반하여, 후자는 직접 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의 본래적 제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지만,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실시의 개념도 특허법 제2조제3호 각목의 행위에 한정된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되며(시간적 한계), 그 실시지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의 영역에 한정되는바, 이러한 제한이 특허권의 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재판매가격의 제한, 경쟁품취급의 제한, 경쟁기술채용의 제한, 원재료 등의 구입처 제한, 판매처 제한, 품질제한, 개량발명 등에 관한 제한, 특허권 부쟁의무, 특허실시료에 관한 제한, 일괄실시허락, 상표사용강제 등의 조항은 산업재산권의 비본래적 행사, 즉 일반계약상의 제한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수량제한, 제조 및 사용기술분야의 제한, 판매분야제한, 가격제한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특허권의 비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조항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본래적 행사에 의한 제한조항에 관하여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당해 제한이 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 제59조의 규정은 동 법 제3조, 제19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행위와 같이 동 법의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제외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배타적 독점권인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를 통하여 산업기술을 발전시키는 한도 내에서 산업정책상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지만, 이 이념에 대하여는 발명을 어느 정도로 공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허권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다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의 정당행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III. 금지된 유형의 지재권 행사

1. 공정거래법상 검토

공정거래법은 특허권자들이 해서는 아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산업재산권 실시허락계약(전용 및 통상실시권 계약)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둘째, 지적재산권의 상호실시허락계약과 공동실시허락계약, 셋째, 지적재산권의 양수 등이다.

2. 경쟁제한적 주요 행위유형에 대한 개별적 검토

(1) 지재권 취득과 승계

원시 취득 및 그 승계 취득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사기에 의한 지재권 취득이 독점이 된다거나 지재권의 통상실시권 취득

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자로부터 지재권을 취득한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취득 및 승계가 불공정행위로 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양도받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한편, BM특허에서는 거래방법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물건 및 방법에 대한 지재권 설정과는 다르게, 원시 취득 자체부터 독점구제 위반의 소지가 크다. 그것은 BM 특허가 대상으로하는 실체가, 거래 대상이 아닌 거래 그 자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2) 특허발명의 불실시

특허를 실시하지 않으면, 당해 발명에 대해서 독점을 허용한 이상, 기술의 이용과 발전이 정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은 이를 막기 위하여 특허발명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07조).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불실시 그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경쟁자 상호 간의 협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승계 취득한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3조 또는 제23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BM특허에서 보장하는 거래방법 자체에

대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 재정 청구를 위한 불실시 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그것 자체가 경쟁 제한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3) 라이센스 거부

특허의 라이센스 거부가 독점규제 위반, 특히 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를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EU의 Volvo v. Veng 사건에서 유럽연합최고법원은 라이센스의 거절만으로는 남용이 되지 않으며 다만 지배적인 사업자에 의한 시장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센스 거부는 지배적지위의 남용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거래방법 자체에 대해 권리를 주는 BM특허의 라이센스 거부는 일반적인 기술 특허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피해가 커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상호실시허락(cross-license)

상호실시라 함은 실시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에 대하여 상호적으로 그 실시권을 허락하는 실시계약이다. 이 실시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각각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번잡을 피하고 무익한 침해소송을 회피하여 공통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는, 물론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적 실시와는 달리 당사자 쌍방의 공동행위의 결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카르텔화할 위험성이 강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호실시에 있어서는 일방적 실시의 경우에는 비분래적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본래적 행사인 실시지역, 실시내용 및 수량제한

협정에 관하여도 시장분할, 판로분할 및 수량카르텔로서 공정거래법상 위법이 될 소지가 크다.

(5) 특허풀(patent pool)

특허풀은 몇 사람의 특허권자가 연속특허권 또는 그와 관련된 권한을 수탁인 또는 제3자에 집중하기로 협정하고, 이를 통하여 각자 필요한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특허풀은 경쟁 촉진성을 가지므로 그 자체는 부당거래행위가 아니라, 구성원이 경쟁관계에 있고 제3자를 통하여 계약에 의거한 경쟁제한의무가 구성원에 부과되었을 때는 부당행위로 되어 위법이 된다.

(6) 노하우 실시계약과 불공정행위

특허권과는 달리 법률상 배타적 독점권으로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의 본래적 행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직접 공정거래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하우 실시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노하우는 누구나 자유롭게 동일한 것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노하우의 승계취득 및 취득 후의 불실시는 불법한 목적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권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적다. 둘째, 노하우는 특허권과는 달리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하우 이용기간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았거나 특허 실시계약 종료 후 이를 노하우 이용계약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것이다. 셋째, 노하우는 특허와는 달리 속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보호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출에 관한 지역제한은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IV. 맷음말

오늘날 경제법의 대표적 내용인 공정거래법의 기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다른 한편 지적 창작에 대한 일정범위내의 독점을 인정하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도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다. 이 양 영역을 어떻게 조화있게 운용할 것인지는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탄생 배경과 연계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유를 인정하고 경제 질서의 운용에 있어서도 국가의 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완전한 모습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의한 경제운용이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조화하고 국민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제질서에 개입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한도에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는 상당부분 수정되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의 경제질서에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그 한계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로 경제법의 탄생배경이 된 것이다. 즉 연혁적으로 국가의 규제 정당화를 위한 법으로서 경제법이 탄생하였는데, 이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기업결합, 부당한 공

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의 행사에는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제한 없이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재권분야가 경쟁질서와는 무관한 것은 아니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시허락의 경우에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공정거래법 제59조에서는 지적재산권분야에 일용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법 영역이 충돌할 때에는 공정거래법과 특허법 등 지재권을 규율하는 법의 목적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순수한 지적재산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정도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할 때에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독점의 허용을 통한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법 목적에 반하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경쟁법(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제재하는 것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노력을 법 운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특허법의 효시인 1623년 영국의 전매조례가, 영국 왕들에 의한 지나친 특허의 남발에 기인하며, 또한 독점금지법의 효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금 끌씹어 볼 때이다. **공정**